

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(변경)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(전화번호:)

신 청 내 용

사 업 명 칭								
사 업 위 치					사 업 면 적	m²		
사 업 목 적								
시 행 방 법					사 업 기 간	~		
토지이용계획 (m²)	용도별							
	면적						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		
	규모							
자금조달계획	국내 투자 자금	자기 자금	융자금	소계	외국 투자 자금	차관	기타	소계
주요변경사항								

「항만법」 제51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
지방해양수산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
		없 음

첨부서류

1. 「항만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
2.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
3.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(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합니다)
4.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
5.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)
6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,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(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7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8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(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9.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(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)
10.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·이전·철거·귀속·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
11.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
12. 「항만법」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13.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

처리절차

